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76,699,998	50,301,000
일반회계	1,371,756,230	41,152,687
특별회계	304,943,768	9,148,313
공기업특별회계	214,074,106	6,422,22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3,861,596	1,615,84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0,762,985	2,122,89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9,449,525	2,683,486
기타특별회계	90,869,662	2,726,090
주택사업특별회계	3,679,524	110,386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915,524	147,46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	9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072,050	92,162
교통사업특별회계	20,954,414	628,632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9,974,448	899,233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8,243,702	847,31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76,359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1,5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